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신의성실의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임직원의 이해상충 차단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임직원이 은행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관리 등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은행과 고객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은행과 고객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간에 이해상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정보교류 차단 체계 구축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관계법령 등에서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정한 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그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교류차단 체계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자본시장법상 겸영투자업자로서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은 해당 겸영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자금부 및 기업금융부의 FX Marketing Sales Team입니다.

또한 사외 정보교류차단으로서, 해외에 소재한 중국공상은행 본점 등 계열회사 등과 (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보교류통제 조직 및 담당 임원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준법감시부이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입니다.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대상 정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관련된 정보 중 다음의 정보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투자자의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통화·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합니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주의

서울지점의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 은행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이하 “매매 거래 등”이라 한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제한

서울지점의 미공개중요정보 식별기준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등에 관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거나 사회통념 상 은행이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이해상충 유형	거래유형	서울지점 대응방안
고객 대 고객	어느 한 고객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고객에게는 손해가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될 우려가 있는 거래	
고객 대 서울지점	고객에게는 손해가 되고 서울 지점에는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거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과 사전 에 협의하도록 함
서울지점 대 계열사	서울지점에는 손해가 되고 계 열사에는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거래	-사외 정보제공 차단장치를 운영 하여 최소 필요 한도에서 정보제 공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 운영 -정보교류 내역에 대한 정기 점 검 실시
서울지점 대 임직원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주식 매매 신고제도 운 영 -메신저 및 전화 녹취 모니터링 제도 운영

최종변경일자: 2026년 8월